

##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4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8.
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### 1. 개정이유

개정된 상위법령과 인용된 법령의 조문을 일치시키고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정비

-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(안 제명)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

- 「결핵예방법」 제29조제3항 → 제18조제3항

다. 별표 처방종류 정비

라.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### 3. 근거법규

가. 「결핵예방법」 제18조제3항

###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( 2011. 7. 4 ~ 7. 24)

## 울산광역시중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명** “울산광역시중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”를 “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**제1조 중** “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결핵예방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”로, “보급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”를 “보급 수수료”로 한다.

**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**

제2조(수수료)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는 별표와 같다.

**제3조 본문 중** “보급시”를 “보급 시”로 하고, **같은 조 단서 중** “재소중”을 “재소 중”으로 한다.

**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**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하고, **같은 조 제4호 중**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**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**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(제2조 관련)

(단위: 원)

처 방 종 류	기 준	수 수 료
		일반환자
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탐부톨+피라진아미드 6	1명 1개월	2,000
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탐부톨 6	”	
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탐부톨+피라진아미드 9	”	
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탐부톨 9	”	
○ 리팜핀+피라진아미드+에탐부톨 6	”	
○ 리팜핀+에탐부톨 12	”	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: 울산광역시중구항결핵제보급 수수료징수조례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수수료) 항결핵제의 처방별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</b></p> <p><b>제3조(수수료 징수)</b> 수수료는 항결핵제 보급시마다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. 다만, 의료보호대상자 및 교도소 등에 <b>제소중인</b> 환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<b>제4조(수수료의 재활용)</b>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<b>각호</b>의 결핵사업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<b>아니한다</b>.</p> <p>1. ~ 3. (생략) 4. <b>기타</b>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</p>	<p>제명 :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<b>결핵예방법</b>, <b>제18조제3항에 따라</b>----- ----- ----- <b>보급수수료</b>----- -----.</p> <p><b>제2조(수수료)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는 별표와 같다.</b></p> <p><b>제3조(수수료 징수)</b> ----- <b>보급 시</b>----- -----. ----- <b>제소 중</b>----- -----.</p> <p><b>제4조(수수료의 재활용)</b> ----- ----- <b>각 호</b>----- ----- <b>아니 된다</b>.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b>그 밖에</b> ----- -----</p>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<b>【별표】</b>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 (단위: 원)				<b>【별표】</b>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(제2조 관련) (단위: 원)			
구 분	처 방 종 류	기 준	수수료 일반환자				
초치료	○ 에담부톨+아이나+리팜피신+ 피라지나미드 6	1인 1월	2,000	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탐부톨+피라진아미드 6	1명 1개월	2,000	
	○ 스트렙토마이신+아이나+리팜피신+ 피라지나미드 6	"			"		
	○ 에담부톨+아이나+리팜피신 9	"			"		
	○ 스트렙토마이신+아이나+리팜피신 9	"			"		
	○ 에담부톨+아이나+리팜피신 6	"			"		
	○ 스트렙토마이신+아이나+리팜피신 6	"			"		
재치료	○ 피라지나미드+파스+스트렙토마이신	1인 1월	2,000	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탐부톨 6	"	2,000	
	○ 에담부톨+피라지나마이신+리팜피신	"		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탐부톨+피라진아미드 9	"		
	○ 에담부톨+피라지나미드+카나마이신	"		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탐부톨 9	"		
	○ 피라지나미드+리팜피신+카나마이신	"		○ 리팜핀+피라진아미드+에탐부톨 6	"		
	○ 에담부톨+리팜피신+카나마이신	"		○ 리팜핀+에탐부톨 12	"		
	○ 에담부톨+피라지나마이신	"					
	○ 에담부톨+리팜피신	"					
	○ 리팜피신+피라지나미드+에담부톨	"					

## 관 련 법 규

### 「결핵예방법」

#### 제18조 (결핵환자등의 의료)
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의료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 의안심사보고서

## (의안번호 842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1. 8. 25(수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1. 8. 30(화)
- 라. 위원회 상정 : 2011. 9. 6(화)

###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이병희 보건소장)

- 개정된 상위법령과 인용된 법령의 조문을 일치시키고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### 4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 정비
  - 울산광역시중구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(안 제명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
  - 「결핵예방법」 제29조제3항 → 제18조제3항
- 다. 별표 처방종류 정비
- 라.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### 5. 관련법규 : 「결핵예방법」 제18조제3항

### 6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 -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정비와 항 결핵제 처방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
- 주요 개정 내용은
  - 항 결핵제 처방종류를 초 치료와 재 치료를 구분하여 치료하는 것을 6가지의 처방종류로 조정
  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문 정비 등
-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다만 항 결핵제 처방종류의 조정 시기와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#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